

「2021년도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사업(1~2단계)」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서비스 분야별 수요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제시하고, 안전성·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문제해결형 보급 모델 마련을 위한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사업(1~2단계)」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과제명) 수요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업(1~2단계)
- (사업목적) 서비스 분야별 실증을 통한 수요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제시하고, 안전성·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문제해결형 보급 모델 마련
- (과제 수행기간) '21. 4월 ~ '22. 11월 (약 20개월)
 - * (1단계) '21.5 ~ 12월, (2단계) '22.1 ~ 11월 / (성과활용기간) 사업종료 후 3년
 - **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예정이며, 과제 진도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2~3단계 연결 예정
- (과업내용) 수요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사업(3단계) 추진을 위한 상세 실증·보급 계획* 및 로봇 개조·개량, 효과성·안전성 검증

1단계	2단계	3단계
BM 기획·설계 ▶ 수요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및 안전대책 기획 ▶ 제품 스펙, 표준, 규제 개선 등 컨설팅 지원	개조·개량 및 검증 ▶ (제품) 제품 개조개량 지원(시제품 제작) ▶ (인프라) 안전성·효과성 검증 지원(규제 샌드박스 연계)	실증·보급 ▶ 수요처 내 로봇 실증 및 민간 보급 지원 ▶ 안전 기준 및 규제 개선(안) 관련 부처 제안

* 1단계에서 제시한 RFP의 실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단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참고

단계별 지원 개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 대상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주관 기관	공급기업(로봇기업, SI기업 등)		수요기관
지원 기간	2021.04. ~ 2022.11. * 연차별 협약 예정		협약일로부터 1년 (단년 협약)
지원 규모	과제당 최대 1억원 (총 22억원)	과제당 최대 3억원 (총 72억원)	과제당 최대 10억원 (총 260억원)
지원 조건	총 사업비 100% 국비 지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30% 이상)	
지원 내용	서비스 로봇 기술·서비스 실증, 규제 개선, 사업화 등을 위한 "상세계획 및 설계비"를 지원	로봇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시제품 제작 등)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안전성·효과성)	로봇 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제반 비용
예시	① 수요처 요구사항 조사 및 제품스펙 도출 ② 실증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①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제품 제작 ② 물류 로봇 서비스 검증(안전성, 효과성 등)	① 음식점 내 배달로봇 실증 및 확대 보급, ② 유통물류 창고 적용 확대

* 총 지원규모의 경우 정부예산(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야별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추진 예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공동 (제품)	<실증 계획 기획> 수요처 요구사항 수립 → 제품 스펙 등 실증계획 도출	<기술전문위 검토> 로봇활용 솔루션 분석, 관련 규제 및 표준 현황 검토	<개조개량> 요구 성능에 따른 개조개량을 통한 시제품 도출	<솔루션 보급> 수요처 내 실증 및 보급
실외 배달	<안전성 입증명안 기획> 실증 단계별 필요 안전인증 획득 및 기준 마련	<기술전문위 검토> 관련 규제 및 표준 등 기준 종합 검토	<기준 검증>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획득, 적합성 평가 획득	<솔루션 보급> 표준(안) KS 제안 및 규제 개선(안) 관련 부처 요구
재활	<효성 입증명안 기획> 임상 유효성 검증 방안 수립	<기술전문위 검토> 임상 추진 및 신의료기술 평가 등 관련 종합 검토	<임상 추진> 로봇 치료 임상 유효성 검증	<부처 제안> 신의료기술평가 제안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 과제 및 규모) 20개 내외 과제, 총 94억원 규모 지원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과제 수, 긴급한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사업비조정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1단계) 총 22억원, 과제당 최대 1억원

- (2단계) 총 72억원, 과제당 최대 3억원

* 사업비 지원 규모는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지원내용) BM 기획(1단계), BM별 맞춤형 로봇 개조개량·검증 비용 지원(2단계)

※ 상세 사업비 구성기준은 '(별첨) 수요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사업 안내서' 참고

- (1단계) 서비스 로봇 기술·서비스 실증, 규제 개선, 수요처 내 사업화 등을 위한 “상세계획 및 설계비” 지원

- (2단계) 로봇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시제품 제작 등)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안전성·효과성)

< 단계별 지원 내용 및 규모 >

구분	1단계	2단계
협약 기간	2021.04.01. ~ 2022.11.30. * 연차별 협약 예정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억원 (총 22억원)	과제당 최대 3억원 (총 72억원)
지원 조건	총 사업비 100% 국비 지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30% 이상)
지원 내용	서비스 로봇 기술·서비스 실증, 규제 개선, 사업화 등을 위한 “상세계획 및 설계비”를 지원	로봇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시제품 제작 등)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안전성·효과성)

□ (지원 대상) 로봇기업(주관기관) · 수요처(참여기관) 간 컨소시엄

○ (주관기관) 로봇 개조·개량 및 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기업(로봇/SI)

○ (참여기관)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1개 이상 수요처 등

* B2C 대상 개인 서비스 로봇의 경우에도 수요처 역할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성 **必**

◆ 컨소시엄 구성

구분	역할	자격요건	기관 수	주요 역할
주관기관	공급 기업	로봇 개조·개량 및 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로봇/SI 기업	1개 (*필수)	서비스 로봇 제품 실증, 상용화 계획 수립 및 개조개량 등
참여기관	수요 기관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수요처	1개 이상 (*필수)	서비스 로봇 제품 및 서비스 활용
	기타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제한 없음	과제 계획 수립 및 실증 전반 필요 연구, 활용 지원 등

* 기관 구성 조건 : 제한 없음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대기업, 해외기업(기관)도 참여 가능하나, 주관기관이 대기업일 경우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만 지원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은 세부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 (창업 예정기업 불가)

* 1기업(기관) 1역할 원칙

- 동일 기업(기관)이 참여기관(공급)과 참여기관(수요)의 역할 동시 수행 불가

□ (지원 조건) 2단계 과제 착수 시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1단계의 경우 별도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이 없으며, 2단계 협약시 **민간부담금 30% 이상 부담**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예외) 주관기관이 대기업일 경우 민간부담금 50% 이상 부담 필수(총 사업비 50% 이내 국비 지원)

구분	국비	민간 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1단계	100% (최대 1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참여기관(수요처) 참여기관(기업/기관/대학 등) 	선택
2단계	70% (최대 3억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참여기관(수요처) 참여기관(기업/기관/대학 등) 	필수 선택

□ (공모 분야 및 방식) 서비스 로봇 솔루션(기술 또는 서비스)을 보유한 기업이 아래 서비스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제안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0, 국무총리 보고)" 내 반영된 과제 상 기준 마련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실행

구분	세부로봇 분야	관련 규제 이슈	
산업	제조	▷ 협동로봇	서비스 작업장 활용 시 내 안전인증 기준 부재
		▷ 모바일 협동로봇	안전 인증 및 분류 기준 부재
		▷ 물류창고로봇(무인지게차 등)	
	건설	▷ 웨어러블 로봇	효과성 입증 필요 (근골격계 질환)
		▷ 건설로봇(원격점검 로봇)	안전 인증 및 분류 기준 부재
농업	▷ 농업용 로봇(스마트팜)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시험 기준 부재	
상업	배달	▷ 실내 이송	승강기 탑승을 위한 부품기준 부재
		▷ 실외 배달	안전 인증 기준 부재
			도로별 주행 기준 부재
	주차	▷ 주차로봇	운영 및 안전 기준 부재
▷ 전기차 로봇			
푸드	▷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기준 및 가이드 부재	
수증	▷ 수증청소 로봇	허가 및 안전기준 부재	
의료	재활	▷ 재활로봇	임상 유효성 검증 필요
		▷ 원격의료/검진 로봇	비대면 의료 규제
돌봄	▷ 돌봄로봇(반려, 배변케어 등)	보조기기 품목 지정을 위한 안전성·효과성	
공공	방역	▷ 소독/방역 로봇	안전 기준 부재
	안전	▷ 소방로봇	안전 기준 부재(KFI 인정)
		▷ 경찰/순찰 로봇	안전 기준 및 관리 규정 부재
기타	빌딩	▷ 안내/키오스크 로봇	안전 기준 부재
		▷ 전문청소 로봇	
	교육	▷ 교육용 로봇	개인정보 보안 가이드 부재
	▷ 소셜로봇/스마트홈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내 미반영 과제의 경우 기타 분야로 지원 가능

- (가점)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0, 국무총리 보고)" 내 반영된 과제에 최대 가점(+2점) 부여

○ (공모 방식)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자유공모) 공모 분야 예시를 제시하되 민간기업이 해당 분야에 적합한 기술·서비스를 상향식으로 제안하여 수행

※ 즉시 실증이 가능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21년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으로 동시 지원은 불가 다만, 서비스의 내용 및 규제 개선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

3.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 유의사항

- '22년 11월까지 로봇 제작 및 검증 등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신청 가능
- 국비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과제 협약 후 지급하되,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협약 전까지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전지원 제외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7.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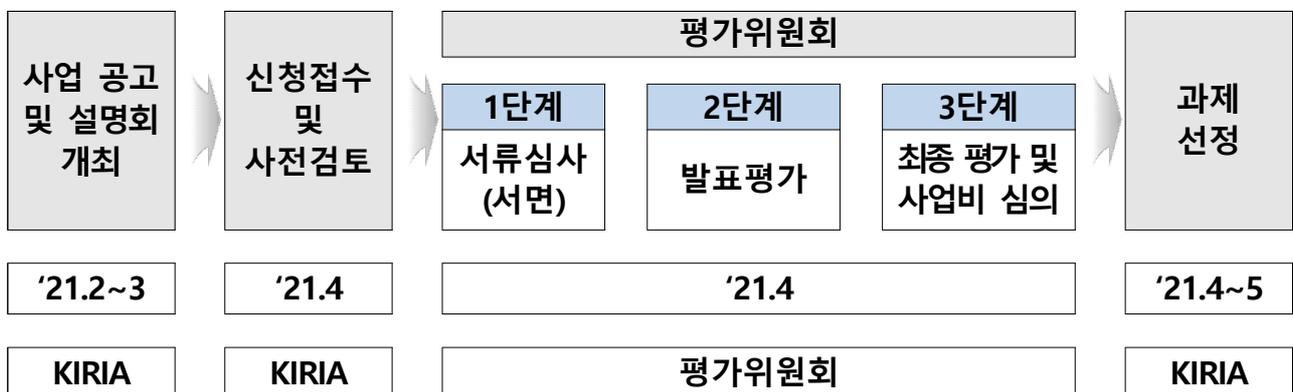
* 본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기준의 경우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과 차이가 있어 '수요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지침에 우선함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2단계 시행 시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실증 가능한 제품이 없어 연구개발 성격인 과제이나, 공고일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R&D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2단계(개조·개량 및 검증)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협약시점까지 불가능한 경우

4.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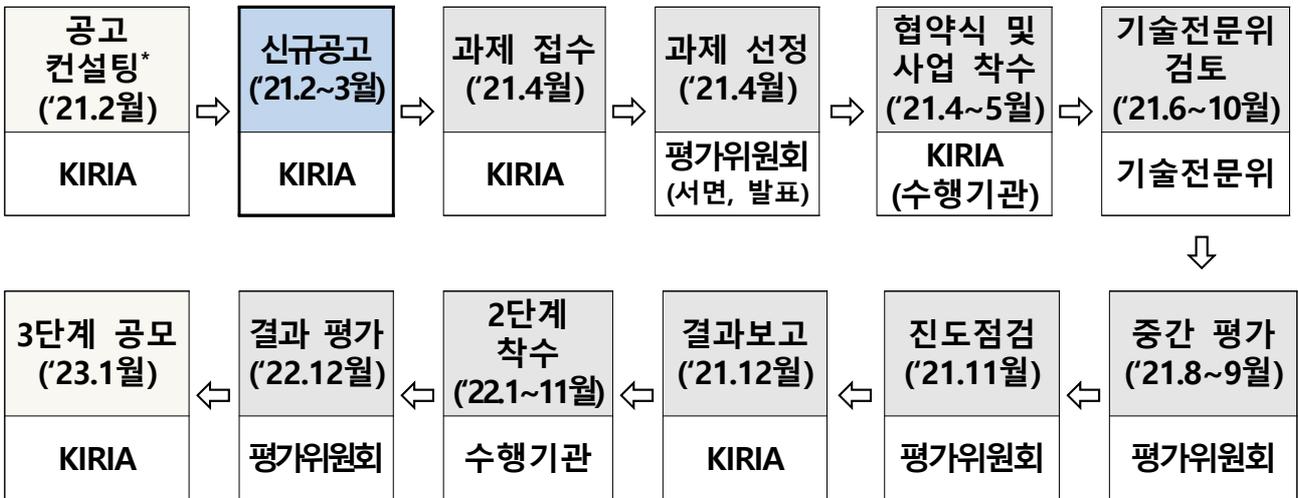
□ 과제 선정 절차

- 과제 선정 절차



* 필요 시 현장평가 수행 예정

○ 과제 수행 절차



* 신규 다년도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관련 사전 컨설팅 추진

5.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 방법

- (평가주체) 접수 과제 필수 제출서류 및 재무심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서면심사(1차) 및 발표평가(2차)는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학회·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로봇·표준, 규제 및 수요분야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비공개)

- (사전검토) 진흥원 과제 담당자가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등 적부 심사

* 근거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수요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사업 안내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서류심사) 사전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신청서에 대한 사전 전문가 심층 검토(서면)

* 1단계 계획서(RFP)에 대한 부합성, 우수성, 실현가능성(구체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 후 발표평가 시 반영

- (발표평가) 사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신청서별 최종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수행기관 선정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 평가항목

-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가점 반영
- ※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추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제외'

○ 발표 평가 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10)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5
	◦ 규제개선 및 안전성·효과성 검증 필요성	5
실증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전문가 풀 구성(안) 및 자문 계획, 안전대책 및 기준 제안 방안 등	10
	◦ 수요처 요구 분석 및 제품실증 추진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10
	◦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파급효과 (30)	◦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혁신성 및 우수성	10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10
	◦ 실증 제품·서비스의 확산방안(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10
수행능력 (2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인프라, 인력, 기술 등)	1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합 계		100+2

- (가점)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0, 국무총리 보고)” 내 반영된 과제에 최대 가점(+2점) 부여

* 본 사업을 통해 개선하려는 주요 규제가 규제 로드맵에 반영된 경우 가점(최대 +2점, 중복 없음) 부여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1. 2. 2.(화) ~ 4. 1.(목), 59일간

* 신규 다년도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관련 사전 컨설팅 추진예정(공고일에서 1개월)

□ (접수기간) '21. 3. 30.(화) ~ 4. 1.(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은 접수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신청방법) 신청기한 內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파일은 이메일 제출, 원본 서류는 우편(대구 본원) 또는 방문 제출(대구 본원)

구분	담당자	이메일 / 내선번호	주소
① 상업, 의료, 규제	정지혜 선임	jh1013@kiria.org 053-210-9664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 사업단 서비스로봇혁신팀
② 산업, 공공, 기타	류주리 선임	juri1219@kiria.org 053-210-9668	

□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제출 대상			비고
구분	양식 제공	기업	기관/ 대학 등	지자체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X	○	○	○	
최근 3년간('18~'20)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20년 자료제출이 시기상 어려울 경우, '18~'19년 자료를 우선으로 제출	X	○	△	X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제출 (비영리기관제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내)	X	○	○	X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X	○	○	X	원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수행기관별
참여의사 협약서	○	○	○	○	수행기관별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	○	○	해당 시
사업비 매칭 협약서	○	○	○	○	사업비 매칭 기관 대상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원본 1부			주관기관 대상
가점 및 사후관리 사항 확인서	○	원본 1부			주관기관 대상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X	대표 참여기관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 (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모든 서류는 접수 전 담당간사 이메일로 파일 우선 제출

7. 추진 일정(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1. 2.~3. (60일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시행 및 컨설팅* * 사업 계획서 사전 컨설팅 1개월 추진 · 사업 설명회(상담회) 개최('21.2월 예정) * 코로나 진행추이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KIRIA	
↓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2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적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 	신청기관→KIRIA	
↓				
사업 선정	'21. 4.	서류심사	· 신청서 관련 사전 전문가 심층 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사업내용,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최종평가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21.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 과제 협약 체결 및 선정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 	KIRIA↔선정기관	

※ 추진 일정은 신청 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 제41조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23)」(19.8, 범부처 합동)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20.10, 범부처 합동)
- 수요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 사업 안내서 (별첨 참고)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첨 참고)

9.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서비스로봇혁신팀

구분	담당자	이메일	유선
① 상업, 의료, 규제	정지혜 선임	jh1013@kiria.org	053-210-9664
② 산업, 공공, 기타	류주리 선임	juri1219@kiria.org	053-210-9668

9.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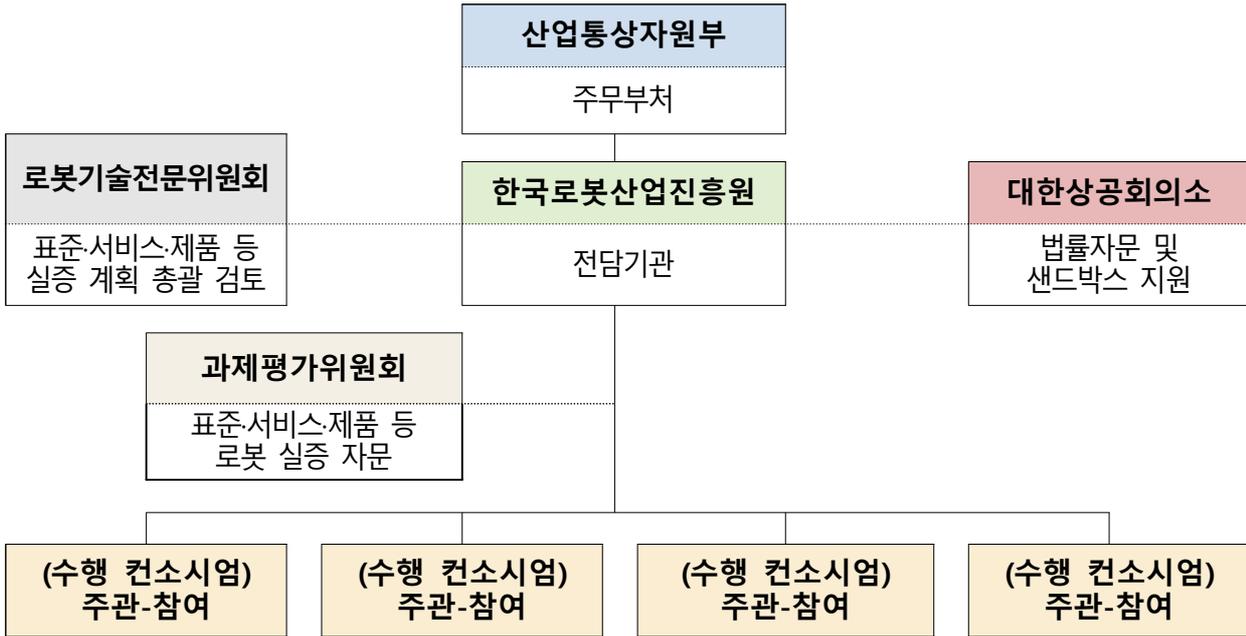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 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실증사업계획서)은 사업 종료 시 진흥원에 제출하며,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예정이며, 정부 출연금의 경우 단계별 재심의를 통해 지급 예정임
 -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2~3단계 수행 및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본 사업은 사업비관리시스템(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참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기타 세부 내용은 별첨 「수요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 안내서」,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 참고

참고1

사업 수행체계(안)

□ 추진체계



< 수행주체별 역할 >

구분	수행 내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총괄, 정책 및 예산 등 총괄 조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사업기획·평가·관리, 예산 확보 및 편성 · 규제 애로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전담기관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계획 평가 및 선정기관 선정,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 과제 범위 및 예산 조정, 사업비 적정성 검토	
로봇기술전문위원회	· 선정과제 기획·로봇 도입 및 표준·서비스 자문, 종합 검토 · 수요 분야 서비스 및 로봇·표준·규제·사업화 등 분야별 전문가 20인 내외 구성	자문기구
대한상공회의소	· 실증과제 법률 자문, 규제 샌드박스 연계 지원	자문기구
주관기관 (공급기업)	·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계획 수립(사업 주관) · 과제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등	로봇기업, SI기업
참여기관 (수요기업)	·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 계획 참여(사업 참여)	수요기관, 연구기관 등

참고2

평가 절차 및 시기(예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1. 2.~3. (60일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시행 및 컨설팅* * 사업 계획서 사전 컨설팅 1개월 추진 사업 설명회(상담회) 개최('21.2월 예정) * 코로나 진행추이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KIRIA
↓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2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신청 서류 적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 	신청기관→KIRIA
↓			
사업 선정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관련 사전 전문가 심층 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최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21.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과제 협약 체결 및 선정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 	KIRIA↔선정기관
↓			
1단계	사업 착수 및 사업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보증보험 발급·제출 (컨소시엄 → 진흥원) 및 1차 국비 지급(50%)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KIRIA
	기술전문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과제 기획·로봇 도입 및 표준·서비스 자문, 종합 검토 	로봇기술전문위원회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점검 및 2차 국비 지급(50%) (과제 진행상황,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평가위원회 및 KIRIA
↓			
진도점검 평가 및 사업비 심의	'21.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도 점검 및 2단계 사업비 심의 * 2단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예정 	평가위원회 및 KIRIA
↓			
2단계	사업 착수 및 사업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보증보험 발급·제출 (컨소시엄 → 진흥원) 및 1차 국비 지급(50%)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KIRIA
	기술전문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과제 기획·로봇 도입 및 표준·서비스 자문, 종합 검토 	로봇기술전문위원회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점검 및 2차 국비 지급(50%) (과제 진행상황,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평가위원회 및 KIRIA
↓			
결과평가	'2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단계 사업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및 KIRIA
↓			
3단계 공모	'2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과제 신규 공고 	KIRIA